의견진술서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 5. 12.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1. 먼저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새로운 모습과 노력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길 기원합니다. 저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 일체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통령령에 정해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반한 것은 유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 줄입니다)가 이의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조 제7항과의 체계상 제6항의 '심의'에는 단순히 '심의'뿐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에 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간을 비교적 단기인 15일로 정해둔 것은 심의지연, 반복심의 등으로 이의신청 제도가 형해화되는 것을 막고 방통심의위에게 스스로 위법·부당한 시정요구를 제거할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시정요구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심의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이라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방통심의위가 욕설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한 심의기간을 어기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위 시행령 제8조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제도 자체를 뒷받침하는 규정인데도 그 중 일부의 효력을 안지켜도 그만인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방통심의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그런데 지난 2011. 5. 26.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진술일을 2011. 6. 20.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이 심의기간을 정해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심의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런 조치입니다.

15일이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간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방통심의위에서 많은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15일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굳이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같이 한 것입니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대통령령에 정해진 심의기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키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먼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3.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통신심의를 "임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의신청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심의·의결한 상임위원회는 통신심의를 할 수 없는 소위원회입니다.

2기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후 2011. 5. 9. 제9차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를 보면 그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2011-09-141)」을 처리하면서 박만 위원장님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공개된 회의록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본 안건은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소위원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법령상 소위원회 직무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 긴박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소위원회를 대신해서 **오늘 선출된 상임위원 세 사람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만약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조와 밑줄은 이의신청인이 한 것임]

박만 위원장님의 발언을 보면, 위 안건은 "임시" 방송심의소위, 통신심의소위, 광고심의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상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저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심의의결한 회의가 "임시"통신심의소위원회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개된 회의록, 심의의결서와 달리 2011. 5. 12.에 있었던 회의가 임시통신심의소위원회라거나 상임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대신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4. 방송통신심의위가 차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과도한 욕설'은 어디까지인가요?

정치인을 욕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치인은 자연스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에 대한 욕을 진짜 욕으로 받아들이고(대중앞에 나선 정치인에게 순수한 의미의 욕설도 못할 바 아닙니다. 국민이 그를 욕함으로서 만족한다면 그런 욕먹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에 내재된 비판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생을 다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정치인 행세를 하는 자에 대해 국민이 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폭력이자 독재의 전주곡입니다. 국민의 욕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는 정치인이라면 그 표현이 욕이라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널리 허용되어야 하고 현재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들이 하는 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욕에 담긴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설은 정치적 소통의 수단이자 정치적 소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정치인에 대한 욕설을 이유로 표현행위에 가위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방통심의위에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욕설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표현 자체를 막겠다는 파쇼적 발상을 정당화하는 심의규정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파쇼적 발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자 현행 심의규정에서 최소심의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욕설과 관련하여서도 "과도한 욕설"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둔 것입니다.

(애초에 법률에는 "과도한 욕설" 따위도 심의할 근거가 없고,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기초한 유해정보심의는 위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모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비판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방통심의위가 나서서 차단한다? 이것은 정치인 이명박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불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불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KBS 개그콘서트 코너 『감수성(感受城)』과 같이 방통심의위의 感受性이 너무 뛰어나 단순한 욕설을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접속차단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2MB18nomA"에서 "18nomA" 부분이 과도한 욕설이기 때문에 유해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8"을 '십팔'이 아닌 '일팔', '에잇틴', '열여덟'으로 읽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에도 앞으로

“18”은 무조건 ‘십팔’로 읽어야 하나요 아니면 “18”은 어떻게 읽던지 무조건 과도한 욕설로 금칙어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러나 18은 선동열, 황선홍의 선수시절 번호였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하여서는 “18nom”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nomic를 축약(7+4+7=18)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2MB도 2메가바이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2MB18nomA“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욕설이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트위터계정 @Kji18nomA는 과도한 욕설인가요? “18”이 과도한 욕설이라면 18보다 못한 “17.99”, 18보다 조금 나은 “18.01”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차단할 것인가요? 또 “1818nomA”, “218nomA”는 어떤가요?

방통심의위의 2011. 5. 12.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로 방통심의위가 의도한 효과를 거뒀나요? 오히려 @Amon81BM2 @2MBILLHYHL @2MBI8nomA @2MBsee8nomA @see8nomMB @18nomMB @18nomA2MB @2MBshefollowMe @2MB2SD18nomA @Fucking2MB @2MB2c8nom @mb18jogatnnom @2MBDog18nomA @MBnagara @mb2c8nom @MB2c8nomA @MB18nomA @JaeOhYi18nomA @Sangsoo18nomA @5sehoon18nomA @2MB18nimA 등 유사한 형태의 계정이 셀수없이 탄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번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기존 아이디를 욕설을 연상하는 아이디로 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페이스북 주소 또한 http://facebook.com/2MB18nomA인데 신고가 트위터 아이디에 국한해 들어와서 심사를 한 것이긴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입장대로라면 방통심의위가 트위터 아이디와 그에 따른 URL 자체가 유해정보라고 차단한 트위터 사용자의 또다른 과도한 욕설이 포함된 음란유해정보가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한마디로 어설프고 말이 안되는 처사입니다. 또 “2MB18nomA”가 트위터 계정 아이디, URL구성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내용이 아닌 아이디 때문에 접속차단을 결정할 정도라면 방통심의위에게는 “2MB18n

omA" 가 절대 유통되어서는 안 될 정보라는 것인데, 그동안 이번 트위터 접속차단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기사, 블로거들의 글, 우회접속URL, 유사 아이디 및 URL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요?

트위터 아이디에 대한 판단은 심의·검열로 긁어 부스럼을 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트위터 사용자들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에 대하여 실제 욕설, 인신공격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트위터 사용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트위터 자체내에서 정화되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무시, 비판, 언팔(unfollow), 블락(block, 나의 글을 못보도록 차단), 스팸신고(블락과 동시에 트위터 사에 신고하는 기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정방법이 존재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는 시대착오적이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할 뿐만이 아니라 섣부른 차단은 더 많은 부작용과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제·검열·차단을 위한 심의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방통심의위 또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고 트위터 사용자들의 소중한 의견도 듣고 트위터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식 트위터 계정 @withkcc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과연 트위터아이디 그 자체를 문제삼아 접속차단조치를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2011. 5. 13. 정식 통신심의소위원회 구성 하루 전날 통신심의를 할 수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에 단초가 된 SBS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SBS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까? 트위터 내용이 아니라 “2MB18nomA”라는 아이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할 정도라면 그 트위터 아이디를 전국적으로 방송한 SBS에도 뭔가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왜인가요? 방송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상에서는 절대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아이디명이 방송에서는 유통되어도 되나요?

방통심의위는 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위법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즉시 취소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원상회복을 바랍니다.

2011. 6. 14.

이의신청인 송 진 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